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11일 09시 53분



목차

목차	2
공지사항	3
[2022.6.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3

[2022.6.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1.11.09 조회수 471 담당부서 여수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61-692-1390

2022.6.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제한기간 : 2021. 11. 11.(목) ~ 2022. 5. 14.(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692-1390)

목록

이전글

GS칼텍스 예올마루 '지역예술인 페스티벌' 공연

다음글

순천 오네뜨 센트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Yeosu Web Contents

